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23호 2023. 1. 11.(수)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_\_\_\_\_ 1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신축된 상가지역 신규 출점 증가로 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 개정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에 관한 부칙을 상세히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를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기존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에 관한 부칙 단서조항 명시(부칙 안 제2조제2항 제1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경제정책과, 전화 032-560-4435, 팩스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신축된 상가지역 신규 출점 증가로 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 개정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에 관한 부칙을 상세히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를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나. 기존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에 관한 부칙 단서조항 명시(부칙 안 제2조제2항제1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단,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생략)</p> <p>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p> <p>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p> <p>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p>	<p>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u> 공고 시기는 <u>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u> -----</p> <p>-----</p> <p>-----</p> <p>-----</p> <p>-----</p> <p>&lt;삭제&gt;</p> <p>&lt;삭제&gt;</p>
<p>부칙(2022.1.10. 규칙 제1033호)</p> <p>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p> <p>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p>	<p>부칙(2022.1.10. 규칙 제1033호)</p> <p>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p>

하는 경우

--- 경우(단, 해당 주소지의 폐업  
영업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7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재외국민 표현 삭제
- 법에 관한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규정 삭제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
-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 등 규정 정비(법제처 자문 반영)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에서 제7호서식 수정)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법」 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관련 내용 삭제('재외국민' 표현 삭제 : 조례 제2조제4항 개정,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법제처 자문 반영)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조례 제3조 개정)

####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 제4조 삭제)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 제8조제1항 개정,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 제10조제1항 개정)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 개정(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법제처 자문 반영)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조례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심의회 규정을 각 조로 분리하여 규정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 : 조례 제12조제9항 개정(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간사 관련 규정 신설 : 조례 제12조제9항 개정(신설)

사. 부칙(법제처 자문 반영) 사항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 조례안 부칙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에 남, 녀 구분없이 생년월일을 기재 있도록 수정(별지 제1,2,3,4,5,6,7호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을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을 “투표인”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명부”를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6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를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으로, “그”를 “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번만”을 “차례에 한하여”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 서구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 -----

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주소  
-----  
-----  
-----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  
-----  
-----  
-----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

<삭 제>

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삭 제>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삭 제>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삭 제>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

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한다.

<삭 제>

⑥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 부의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  
해당 -----  
-----.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간사) 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처리기간) ①·② (생략)

제19조(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

③ -----

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  
 -----  
 -----  
 -----  
 ----- 차례에 한하여 -----.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22조(공표방법 등) -----  
 -----  
 -----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관계법령 발취

## ■ 주민투표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12.>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12.>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